

학교 규칙 개정 관련 개요

1. 개정 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학교의 학업중단예방 노력 강화를 위해 학교 규칙에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중단숙려제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하여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학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개정 사항

1) 학업중단예방 관련 조항 추가

가.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개정

나. 목적 :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 강화

다. 기대효과 :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라. 개정 사항

제11장 학업중단 예방

제38조 (학업중단 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2)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 구체적 명시

가.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4항에 의거

나. 목적 :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 구체적 명시하여 일선 학교의 혼선 방지

다. 개정 전

제12장 보칙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라. 개정 후

제12장 보칙

-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